



미국 법무성  
시민평등권부



미국 교육성  
시민평등권실

## 영어 미숙련 (LEP) 학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학교와 교육청을 위한 정보

이 정보지는 영어가 기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쓰지 못하는 학부모와 보호자의 권리에 관해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 **내 아이의 학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학교는, 영어가 능숙한 부모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해, 영어가 미숙한 부모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 및 학교 프로그램 등록
- 언어 지원 프로그램
- 리포트 카드
- 학생 훈육 정책과 절차
- 특수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특수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 학부모-교사 상담
- 불만 제기 절차 및 차별금지 관련 통지
- 부모 안내서
- 영재 프로그램
- 마그넷 스쿨 및 차터 스쿨
-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요청하는 요청서

### **내 아이가 영어에 능숙하고 나도 영어에 어느 정도 능숙한 경우에도, 내가 요청하면 학교가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까?**

예. 학교는 부모의 언어 지원 요청에 응답해야만 하고, 자녀가 영어에 능숙한 경우라도 부모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 **내 아이의 학교가 내 아이, 다른 학생,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직원에게 나를 위해 번역이나 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의 번역 또는 통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모를 위한 번역이나 통역을 학생, 형제나 자매, 친구,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직원에게 의존하거나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 **내 아이가 영어 학습자라면, 내가 학교에서 어떤 정보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까?**

귀하의 자녀가 등록을 할 때, 귀하께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 양식 혹은 그와 유사한 양식을 받으실 것인데, 이것은 학교가 잠재적인 영어학습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학생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영어 학습자로 판별될 경우, 학교는 귀하께 학년이 시작되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녀의 영어 능숙도,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특정 서비스로부터 자녀를 빼낼 수 있는 귀하의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el-students-201501-korean.pdf> 를 방문하십시오.

**교육청이 영어 미숙련 학부모를 식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은 학부모가 영어 미숙자인지, 그리고 그들의 언어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과정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그 교육구 내에서 통용되지 않는 언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녀가 영어에 능숙한 학부모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어 미숙련 학부모를 식별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구두 및/또는 서면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가정 언어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학교가 만든 초기 조사서는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및 주변 지역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영어 미숙련 (LEP)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언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이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까?**

- 교육청은 영어 미숙련 학부모들에게 번역된 자료 또는 언어 통역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적인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은 무료여야 하고, 적절하고 유능한 직원 또는 적절하고 유능한 외부 자원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교육청은 통역사 및 번역가들이 해당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 용어 또는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언어로 지식이 있고, 통역사 및 번역가의 역할과 통역 및 번역의 윤리, 기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훈련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이 이중 언어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직원이 영어 미숙련 학부모와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언어로 학부모의 말을 학교 측에, 그리고 학교 측의 말을 학부모에게 통역하거나 문서를 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학교가 이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미국 교육성 시민평등권실(OCR)의 웹사이트, [www.ed.gov/ocr](http://www.ed.gov/ocr) 을 방문하거나 OCR 의 전화, (800) 421-3481 (TDD: 800-877-8339) 또는 [ocr@ed.gov](mailto:ocr@ed.gov)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owto-korean.pdf> 을 방문하십시오.
- 미국 법무성 시민평등권부의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about/edu/](http://www.justice.gov/crt/about/edu/) 를 방문하거나 (877) 292-3804 또는 [education@usdoj.gov](mailto:education@usdoj.gov)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justice.gov/crt/complaint/#three](http://www.justice.gov/crt/complaint/#three) 를 방문하십시오.



미국 법무성  
시민평등권부

미국 교육성  
시민평등권실



- 영어학습 학생 및 영어 미숙련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추가적인 OCR의 안내는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ellresources.html>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